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02 발의연월일: 2025. 4. 10.

발 의 자: 박수현 · 김종민 · 오세희

이연희 · 조인철 · 이개호

황 희・박용갑・이건태

정준호 · 위성곤 · 조계원

신영대 · 임호선 · 임오경

김재원 • 민형배 • 김윤덕

강유정 • 이기헌 • 배현진

의원 (21인)

제안이유

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, 관리, 활용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대학이자, 전통 문화와 국가유산을 교육하는 국내 유일의 국립대학임.

국가유산 체계 마련,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 등 커다란 제도의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기존의 교육방식과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, 국가유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과 실제적 응용력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전통문화 연구과정 참여가 필수적임.

또한,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에 맞춰 전통 유

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연구 인력 확보는 물론 세계 유수 대학과의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.

이러한 수요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연구원을 두고 국가유산 청과 특정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함은 물론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 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도록 함.

주요내용

- 가.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·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두도 록 함(안 제5조제4항).
- 나. 국가유산청장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- 다.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생산성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 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·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·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(안 제18조).
- 라.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

고,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도록 함(안 19조).

법률 제 호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·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.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, 제17조 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7조(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) 국가유산청장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- 제18조(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)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생산성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·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·기기 등을 공동이용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비용은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19조(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) ①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

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.
- 제20조(창업지원) 총장은 국가유산산업과 관련된 교원·직원·학생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창업비용 · 개발자금의 지원
 - 2. 대학 연구·개발 성과의 제공
 - 3. 연구시설 · 기기 등의 공동 사용
 - 4. 창업교육 지원
 - 5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제21조(국제교류의 촉진)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원을 초빙 하거나 외국인 학생의 수학(修學)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교직원 등) ① ~ ③ (생	제5조(교직원 등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
	의 창조적 계승·발전과 국가유
	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
	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
	<u>원을 둔다.</u>
<u>④·⑤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제17조(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)
	국가유산청장은 특정과제의 공
	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
	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
	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
	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<u> <신 설></u>	제18조(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)
	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연구
	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
	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
	<u>구기관·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</u>
	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・기기
	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
	야 한다. 이 경우 그 비용은 이
	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9조(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) ① 총장은 전통문 화대학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 력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.

제20조(창업지원) 총장은 국가유 산산업과 관련된 교원·직원· 학생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창업비용 · 개발자금의 지원
- 2. 대학 연구·개발 성과의 제 공
- 3. 연구시설·기기 등의 공동 사 용
- 4. 창업교육 지원
- 5.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21조(국제교류의 촉진) 총장은 전통문화대학교의 교육의 질을

	향상시키고 외국과의 학술교류
	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교
	원을 초빙하거나 외국인 학생의
	수학(修學)을 위한 조치를 취할
	<u>수 있다</u>
<u>제17조</u> ~ <u>제21조</u> (생 략)	<u>제22조</u> ~ <u>제26조</u> (현행 제17조부
	터 제21조까지와 같음)